

2022년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기총회 자료집

일시 : 2022년 01월 19일(목) 16시

장소 : 줌(Zoom)



# 목 차

---

## 1. 보고사항

정관 .....	1
활동보고 .....	13
법인 현황보고 .....	16

## 2. 의결안건

### 2-1. 사업평가서

법인 .....	19
활동지원팀 .....	21
자립생활팀(센터) .....	23
자립생활주택(체험홈) .....	27

### 2-2. 회계결산서

법인 .....	32
활동지원팀 .....	33
자립생활팀(센터) .....	35
자립생활주택(체험홈) .....	37

### 3-3. 사업계획 및 예산서

법인 .....	42
활동지원팀 .....	44
자립생활팀(센터) .....	52
자립생활주택(체험홈) .....	56

### 3-4. 신임 협회장 선출의 건

소개 .....	62
----------	----

---



I

2021년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보고내용

# 1. 정관

제정 2014년 04월 01일  
 개정 2018년 12월 12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인뇌협’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Korea Solidarity for Human rights of disability people with Brain lesion Incheon branch”로 하며 약칭으로 “KSHB”, “인뇌협”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인뇌협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복지를 실현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의 사회활동(복지, 교육, 노동)에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인뇌협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② 인뇌협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군·구에 지역지회(지역명+뇌병변장애인인권지회)를 둔다. 지역협회의 장은 사무실의 소재지, 연락처 및 지부 임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회에는 지역회장, 지역협회 규약이 정하는 수의 임원 및 지역회장과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둔다. 지역회장은 지역협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역협회 임원은 운영위원회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역협회는 이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지역협회의 활동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은 지역협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회장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협회가 인뇌협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협회가 총회 및 운영위원회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협회가 인뇌협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4조 (사업) 인노협은 제 2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들의 의식개혁 및 삶의 전반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생활운동 사업
4. 장애인의 사회 참여방안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의 적절한 정책교류를 통한 정부 장애인 복지정책 제안 사업
6. 외국 장애인 단체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국제 대회 참여 · 개최 사업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 사업
8. 장애여성의 인권향상 사업
9.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
10.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11. 장애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스포츠 사업
12.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제 2 조에 규정된 목적에 찬성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노협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인노협에서 제명된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1. 정회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뇌병변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로 인노협 또는 군.구지역협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후원회원 : 회원이 아닌 자로 본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사람

② 인노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협회장은 뇌병변장애인으로 함
2. 총회 의결권
3.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 ② 후원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협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③ 정회원으로서의 권리 중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총회 전 15일 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1. 총회에 출석 하여야 할 의무
- 2.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할 의무
-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하여야 할 의무
- 4.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탈퇴와 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인노협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포상) 인노협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 또는 외부의 인사, 조직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노협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노협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④ 회원을 징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소명과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한다.
- ⑤ 징계 정도, 징계 절차 및 징계 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인노협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협회장 1인
- 2. 국장 1인
- 3. 운영위 9인 이내
- 4.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인노협이 협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운영위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노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노협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인노협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② 협회장이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인노협의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3. 과실범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집행유예 제외)를 받아 확정된 자. 다만, 인노협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업무 상 횡령, 배임, 절도는 제외)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모두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궐위시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인노협을 대표하고 업무 및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인노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인노협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한뇌협 중앙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인뇌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회의

### 제1절 총회

제15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인뇌협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인뇌협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장소, 일시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15일 이전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제 및 의안 발의, 총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대표자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협회장이 궐위 되거나 총회 소집을 15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된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감사 1인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회장은 각각의 경우 지정된 대표자가 수행한다.

- ③ 총회에 안건을 제출 하고자 하는 회원은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시작 전에 회장에게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인뇌협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 승인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단, 정관 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 승인
6. 기본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반복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인뇌협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재적회원이란 이 정관 6조 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 ② 인뇌협의 총회는 총회장에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장 출석회원은 재적회원 중 불참회원으로부터 서면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참석만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 (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 해가 상반될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 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 2절 운영위원회

제21조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6회 개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에는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서면(전송, 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채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인노협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 회장은 그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사무 부서

제26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인노협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지역지회

제27조 (지역지회의 설립) ① 인노협은 제3조 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군·구에 지역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지역지회의 사무소는 각 군·구 중심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역지회 설립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지역지회 운영규정) 지역협회는 정관에 준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인노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지역지회의 임원) ① 지역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지역지회장 1인
2. 감사 1인 이내
3. 운영위원회 5인 이내

② 지회회장은 지역지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만약 12조 ①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승인을 불허하고 지역협회에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회회장은 지역지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역지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귀속재산의 처분을 제외한 재산운영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지역지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역지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지역지회의 인준) 신규 지역협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7장 부설 센터

제32조 (센터 설치) 인뇌협이 목적사업 수행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인뇌협의 부설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센터 규정)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 제8장 재정과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 인뇌협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인뇌협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재산의 관리) ① 인뇌협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인뇌협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인뇌협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뇌협의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36조 (재원) ① 인뇌협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인노협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한노협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노협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 (회계 년도) 인노협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① 인노협의 회계년도 15일 전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자체 및 한노협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인노협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대하여는 보수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 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차입금) 인노협이 수행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총당할 수 있다.

## 제9장 보칙

제42조 (정관의 변경) 인노협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해산 및 합병) ① 인노협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중앙 한노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노협을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 (준용 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인뇌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2.

## 2021년 활동보고

### 1월 - 2월

- 01월 04일 : 시무식 (사무실/13시)
- 01월 14일 :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총회 (16시/줌)
- 01월 15일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회 회의 (14시/줌)
- 01월 19일~21일 : 발달장애인 마음읽기 워크숍 (10시/줌)
- 01월 28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위원회 회의(14시/줌)
- 01월 29일 :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총회 (14시/줌)
- 02월 03일 ~ 05일 : 지역나눔(송편) 및 마스크 배달 진행
- 02월 08일 : 서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기자회견 (11시 서구청)
- 02월 09일 : 인뇌협 운영위원 회의 (16시 사무실)
- 02월 10일 : 박기연 열사 차례 (11시 사무실 / 카톡방송)
- 02월 15일 : 미추홀구 인권센터 인권 위원으로 위촉 (14시 청소년회관)
- 02월 18일 : 한뇌협 총회 (14시 줌)
- 02월 19일 : 전장연 총회 (14시 줌)
- 02월 24일 : 서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집회 및 기자회견 (인천시청 12시)

### 3월 - 4월

- 03월 09일 : 미추홀구 인권센터 인권역량 소위원회 회의 (미추홀구청 15시)
- 03월 11일 : 인천장차연 대표자 회의 (민들레 야학 15시)
- 03월 18일 : 한자협 활동지원기관 교육
- 03월 18일 : 중앙 농성장 사수(줌 15시/ 이룸센터 앞 14시)
- 03월 23일 : 인천자립생활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인천센터 야학 16시)
- 03월 24일 : 인천장차연 대표자 회의 (바래미 야학 14시)
- 03월 25일 : 인자협 간담회 (사무실 14시)
- 03월 26일 : 전국420공투단 선포식 (세종시 13시)
- 03월 30일 : 활동지원사업 평가 (사무실 11시)
- 03월 31일 : 인천420공투단 첫회의 (바래비 14시)
- 04월 06일 : 인천420공투단 선포식 (인천시청 14시)
- 04월 08일 : 인천420공투단 1인시위 (인천시청 11시)
- 04월 14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위 회의(줌 14시)
- 04월 19일 : 인천420공투단 결의대 및 기자회견 (인천시청 14시)
- 04월 20일 : 전국420공투단 결의대회 (세종시 13시)
- 04월 22~23일 : 인천420공투단 요구안 면담 (인천시청 14시)
- 04월 29일 : 인뇌협 운영위원 회의 (16시 사무실)

5월 - 6월

- 05월 04일 : 인천자립생활네트워크 회의 (경인센터 16시)
- 05월 06일 : 인천420공투단 버스타기 투쟁(인천시청 13시)
- 05월 11일 : 인천시청 신관 편의조사 (인천시청 신관 13시)
- 05월 14일 : 미추홀 구청 기자회견 및 구청장 면담(미추홀 구청 15시)
- 05월 18일 : 인천420공투단 회의(사무실 14시)
- 05월 24일 : 인천자립생활네트워크 회의 (민들레센터 16시)
- 05월 25일 : 인권세센터에서 수봉공원 무장애의 나눔길 모니터링 (수봉공원 14시)
- 05월 31일 : 차별철폐대행진 선포기자회견(인천시청 11시)
- 06월 02일 : 박기연 열사 추모제(인천시청16시)
- 06월 03일 :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워크숍(샤펠드미앙13시)
- 06월 04일 : 최저임금위원회 간담회(사무실 14시)
- 06월 09일 : 큰운물센터 견학한자협과 (큰운물 센터 11시)
- 06월 09일 : 미추홀구 인권센터 회의 (미추홀구청14시)
- 06월 10일 : 한뇌협 중앙 간담회 (14시/사무실)
- 06월 17일 : 권오진 열사 추모제 (인천시청 / 16시)
- 06월 28일 : 39차 운영위원회 회의(사무실 / 16시)
- 06월 29일 : 인천자립생활네트워크 회의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6시)
- 06월 30일 : 인천420공투단 2차 면담 (인천시청/16시)

7월 - 8월

- 07월 05일 : 자립생활센터 월례회의 (13시30분/사무실)
- 07월 28일 : 인천 미추홀구 탈시설 간담회 (15시/사무실)
- 08월 05일 : 인천420공투단 회의 (인천시청 / 16시)
- 08월 09일 : 활동지원팀 월례회의 (14시/사무실)
- 08월 10일 : 자립생활센터 월례회의 (11시/사무실)
- 08월 11일~13일 : 활동지원사 일지 제출
- 08월 24일 : 40차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위 회의(사무실 16시)
- 08월 25일 : 인천자립생활네트워크 회의 (큰솔센터 / 16시)
- 08월 27일 : 연수구 주간보호센터 사망사건 릴레이 기자회견 및 구청장 면담 (연수구청 /10시30분)

9월 -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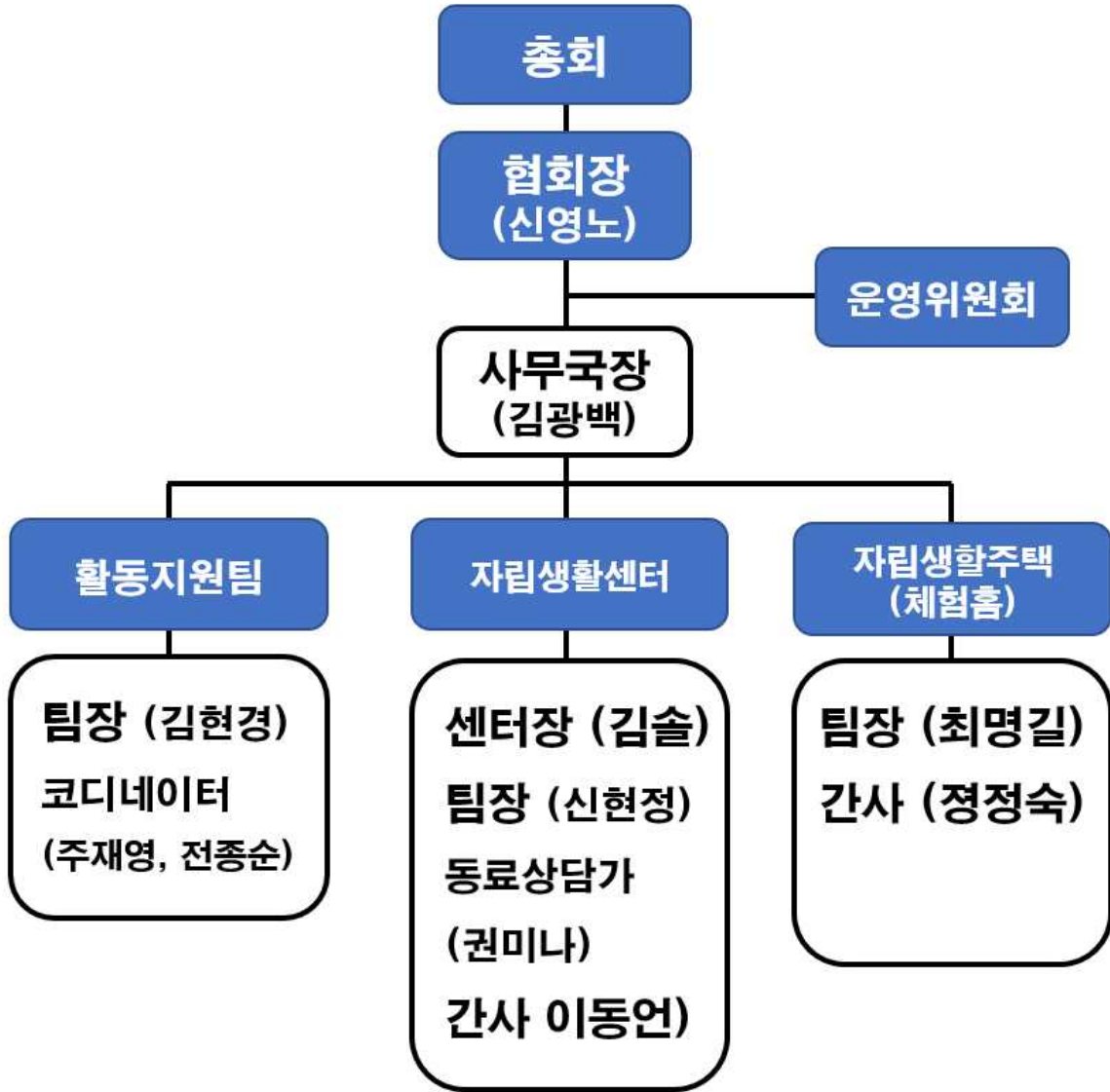
- 09월 13일 : 인천지하철 노조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인천시청 / 13시30분)
- 09월 17일 : 박기연 열사 차례 (사무실 / 11시)
- 09월 23일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 (작은자 / 15시)
- 10월 6일~9일 : 활동지원팀 활동일지 제출
- 10월 14일 : 인자협 회의 (중16시)
- 10월 19일 : 한자협18주년 기념/ 인뇌협 운영위 회의 (유튜브11시/ 사무실 17시)
- 10월 20일 : 인천 네트워크 회의(서구센터 16시)
- 10월 23일 : 인천퀴어문화 축제(중&로데오 거리 14시)
- 10월 27일 : 인천자립생활 네트워크 인천시청 사회복지과 면담 (인천시청 15시)
- 10월 28일 : 인천 교통공사 면담(제4차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수립)(사무실15시)
- 10월 29일 : 전장연 장애인당 설명회 / 인천장차연 회의(중 15시)

11월 - 12월

- 11월 01일 : 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사무실 14시)
- 11월 02~03일 : 하반기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중)
- 11월 04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대회(중 13시)
- 11월 12일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도점검(사무실 14시)
- 11월 16일 : 보치아 친선 대회 참가 (선학경기장 / 10시)
- 11월 25일 : 이덕인 열사 추모제 (인천시청 13시)
- 11월 30일 : 자립생활 네트워크 회의(경인센터 16시)
- 12월 01일 : 교통약자 편의 증진 4차년 계획 토론회(인천예술회관 15시)
- 12월 02~03일 : 전국 예산투쟁 결의대회(여의도 1박2일)
- 12월 09일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자 회의(민들레 야학 15시)
- 12월 15일 : 저상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토론회 (14시/중)

### 3. 법인 현황 보고

#### 1. 조직도



2. 업무분장표

직급	이름	담당업무
협회장	신영노	법인/협회/센터 총괄
사무국장	김광백	법인/협회/센터 실무 총괄
활동지원팀	김현경	활동지원사업 총괄, 활동지원사/이용인 계약 및 상담
	주재영	활동지원사업, 법인 회계 업무 총괄
	전종순	활동지원사/이용인 계약 및 상담
자립생활팀 (센터)	김 솔	센터 업무 총괄 및 대외사업
	신현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무 총괄
	권미나	장애인 동료 및 차별상담, 권익옹호 지원
	이동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최명길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총괄
	정정숙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여성체험홈) 총괄

## Ⅱ . 의결안건

### 1. 2021년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업평가서

# 의결안건 1. 2021년 사업평가서

## 1. 법인

### 1-1) 사업현황 보고

#### ① 2020년 사업의 개요

목표	공부하자 인노협!!	소통하는 인노협!!	연대하자 인노협!!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1회 장애 복지 분야 이슈 다루기</li> <li>• 발달장애인 마음읽기</li> <li>•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진행</li> <li>• 장애인권 아카데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 문서 활용하여 의 소통 체계 강화</li> <li>• 홈페이지 활동보고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연대활동 강화</li> </ul>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미래를 계획.</li> <li>-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림.</li> <li>- 종사자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적인 노력을 진행.</li> <li>- 스스로 소통하면서 함께하기 위한 고민을 마련</li> <li>- 더 튼튼한 공동체로서 함께 연립함.</li> </ul>		

#### ② 사업 진행 결과

내용	계획	달성	비고
월 1회 공부하기	11회	11회	
발달장애인 마음읽기	1회	1회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진행	1회	0회	
장애인권아카데미	4회	4회	
직원 소통 강화	수시	수시	
외부기관 소통 강화	수시	수시	
연대강화	수시	수시	

## 1-2) 사업평가

- 팬데믹 영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온라인 역량이 강화되면서 온/오프 등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음.
- 교육 활동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저상버스 토론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음.
- 2020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자조모임은 방역수칙 준수 등 인원을 나눠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음.
- 420공투단, 서구 어린이집 학대사건, 연수 주간보호센터 이용인 사망사건 등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해서 연대를 열심히 하였음.
- 하반기 저상버스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



## 2. 활동지원팀

### 2-1) 사업현황 보고

#### ① 기본 현황 보고

	이용인	증감	활보	증감	국비 시간	증감	시비 시간	증감	결재 시간
01월	164	-4	153	1	19,642	-796	2,137	-153	21,778
02월	152	-12	152	-1	18,270	-1,372	1,857	-280	20,126
03월	152	-	154	2	17,867	-403	2,200	344	20,067
04월	154	2	155	1	17,997	131	2,306	106	20,303
05월	156	2	154	-1	17,559	-438	2,143	-163	19,702
06월	160	4	156	2	18,305	746	2,253	110	20,558
07월	164	4	162	6	18,459	154	2,196	-58	20,655
08월	165	1	161	-1	18,721	2262	2,211	16	20,890
09월	171	6	167	6	18,422	-300	2,220	9	20,641
10월	166	5	166	-1	18,845	424	2,266	46	21,111
11월	165	1	167	1	19,672	827	2,303	37	21,593
12월	157	8	168	1	19,161	-511	2,255	-48	21,416

## 2-2) 사업평가

### ① 정량평가

내용	계획	달성	비고
이용자(보호자 교육) 교육	1회	100%	코로나로 방문이 어려웠고 자료집으로 대체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조사 실시	2회	100%	동료지원가 활용하여 상반기 이용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활동지원인력 서비스 관리 및 간담회	수시로	100%	활동지원사의 고충 및 상담은 수시로 우선과 개별 상담 및 급여제공일정표 제출시 원활하게 하고 있음. 연4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점검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시간	100%	상반기 자료집으로 대체하였고,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음.
전담관리인력 교육	16시간	100%	
지역나눔사업(설/추석/김장)	3회	100%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들어 배부하던 것을 물품으로 대체함.
자조모임 활동	-회	70%	코로나 등으로 일정이 취소된 자조모임으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② 총평

- 2021년도 코로나 상황으로 활동지원사 연계 및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온라인을 활용하면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진행하였고, 동료지원가를 활용하여 이용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 코로나로 인한 특별지원급여 등으로 수시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용인 입장에서 잘 지원할 수 있었음.

### 3. 자립생활팀 (자립생활센터)

#### 3-1) 사업현황 보고

주요기능			참여실적 (회/실인/인원)			주요활동 내용 (일시, 장소 등)
구분	대분류	세부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률 (%)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찾아가는자기 옹호학교	32회 36명 192명	36회 59명 215명	133% 197% 133%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센터 및 학교 - 내용 : 당사자 자기옹호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 - 특이사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여름방학 찾아가는 자기옹호학교 진행 계획을 전면 취소함.
		장애인권교육 아카데미	4회 20명 40명	4회 29명 68명	100% 145% 170%	- 일시 : 3월 5일, 12일 / 10월 6일, 13일 - 장소 : zoom 이용 온라인 강의 - 내용 : 다양한 사회문제 및 인권과 관련한 강의진행을 통해 인권의식 고취 - 특이사항 :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인원에 제약을 두지 않아 목표인원보다 초과되었음.
		부모교육	4회 30명 102명	16회 48명 134명	400% 160% 131%	- 일시 : 2월, 4월, 7월, 11월 총 16차례 진행 - 장소 : 온라인 - 내용 :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 진행 -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함.
		발달장애인조 력인양성과과정	12회 20명 240명	12회 104명 1138명	100% 520% 474%	- 일시 : 10월 6일~11월 12일, 매주 화, 목, 10시~12시 - 장소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 내용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 - 특이사항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함.
		저상버스모니 터링	2건	2건	100%	- 일시 : 9월-12월 - 장소 : 인천시내 저상버스 및 토론회 진행 - 내용 : 인천시내 저상버스 100대 접근성 모니터링 교육 및 조사, 토론회 진행 - 특이사항 : 저상버스 모니터링 및 토론회 내용은 인천일보 및 남인천방송 등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
	동료상담	개별 동료상담	60건	89건	148%	- 일시 : 연중 수시 - 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심리 지원, 사례지원 등을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이사항 : 기존 회원 중심에 내방 상담을 진행하였음.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역량강화지원 '라이프스케치'	4명	4명	100%	- 일시 : 6월 ~ 12월 - 내용 : 개인별 욕구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자기강화를 지원함 - 특이사항 : 4명중 2명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을 진행하였음(연극 5회, 드럼 10회 추가지원)
		발달장애여성 자조모임	24회 8명 192명	28회 8명 140명	117% 100% 73%	- 일시 : 월 2회 토요일 - 장소 : 온라인 - 내용 : 발달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발달장애청년 자조모임	24회 8명 192명	27회 8명 165명	113% 100% 86%	- 일시 : 월2회 일요일 - 장소 : 센터 교육실 및 온라인 - 내용 : 자기결정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주요기능			참여 실적 (회/실인/인원)			주요활동 내 용 (일시, 장소 등)
구분	대분류	세부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률 (%)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4회 5명 120명	8회 5명 30명	33% 100% 25%	- 일시 : 매달 2, 4째 주 토요일 - 장소 : 삼산영성마을회관 - 내용 :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조모임 - 특이사항 : 거리두기 4단계로 마을회관이 폐쇄되었고 참여자들의 참여가 어려워 진행하지 못함.
		장애인 자조모임 '자발프'	40회 10명 400명	42회 16명 346명	105% 160% 87%	- 일시 : 화요일, 목요일 - 장소 : 유동적 - 내용 :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자조모임활동을 통한 자기결정권향상 및 긍정적 관계망 형성 -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원을 나누어 요일별로 진행하였으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원 축소하여 한회기만 진행함. 이후 2팀으로 나누어 격주로 활동 진행하였음.
		뇌변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교실	36회 10명 360명	35회 9명 205명	97% 90% 57%	- 일시 : 매주 수요일, 금요일 - 장소 : 바래미야학 강의실, 미추홀 체육관 - 내용 :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 관계망 형성 -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원을 나누어 요일별로 진행하였으나 거리두기 4단계 발표로 잠시 휴식하였음. 이후 4단계 연장에 따라 인원축소하여 진행하였음.
		장애인미술교실	24회 6명 144명	16회 7명 54명	67% 117% 38%	- 일시 : 10월 27일~12월 17일(매주 화, 목요일) - 장소 : 온라인 - 내용 : 비대면 미술활동을 통한 내재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여가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난타	24회 12명 186명	28회 9명 151명	121% 75% 81%	- 일시 : 매주 화요일 - 장소 : 온라인 - 내용 : 미술활동을 통한 내재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여가활동 지원 - 특이사항 :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AAC자조모임	10회 5명 50명	11회 5명 47명	110% 100% 94%	- 일시 : 격주 월요일 - 내용 : 언어적 장애인의 AAC 기기 활용도를 높힘으로서 언어적장애의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지역내에 친화적 조성을 위해 활동함. - 특이사항 : 코로나 단계가 격상하면서 활동에 제약이 생겨 7월부터 시작하였음. 마포 AAC 마을을 참여자들과 필수적으로 다녀오기 1회 연장 회기를 진행하였음.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도도한girl'	24회 5명 120명	16회 5명 81명	67% 100% 64%	- 일시 : 격주 토요일 진행 - 장소 : 본 센터 교육실 - 내용 : 중증장애여성 당사자 모임을 통해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대응 할 수 있는 힘을 키움. - 특이사항 : 코로나 19 상황에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 강사 섭외가 어려움이 있어서 8회를 덜 진행함.
		장애인자조모임 (작은자야학)	30회 5명 150명	30회 6명 152명	100% 120% 101%	- 일시 : 매주 금요일 - 장소 : 작은자야학 - 내용 : 발달장애인과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노래교실	13회 5명 65명	13회 6명 62명	100% 120% 95%	- 일시 : 매주 수요일 - 장소 : 바래미야학 강의실 - 내용 : 노래부르기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만족도 향상 - 특이사항 : 거리두기 4단계 발표로 시작시점이 연기되었고 9월에 첫 회기를 진행하였음.

주요기능			참여실적 (회/실인/인원)			주요활동 내 용 (일시, 장소 등)
구분	대분류	세부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률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자립생활 아카데미 "바깥서기"	12회 10명 120명	12회 30명 334명	100% 300%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월 2회 수요일</li> <li>- 장소 : 온라인</li> <li>- 내용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li> <li>-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월2회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함</li> </ul>
		금전관리교육	4건	4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10월 13일, 11월5일, 12월25일, 27일</li> <li>- 장소 : 바래미야학 강의실</li> <li>- 내용 : 온라인 금전관리 교육 4회분 강의 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음.</li> </ul>
		거주시설장애 인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	6건	7건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7월 14일 / 8월 10, 24, 25일 / 10월 26일, 27일, 28일</li> <li>- 장소 : 색동원 및 온라인</li> <li>- 내용 : 시설 거주 장애 당사자 대상으로 인권의 의미 탈-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장애당사자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탈-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li> <li>- 특이사항 :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심화 전 색동원 방문, 이후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 및 성촌의집, 밝은 마음 등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음</li> </ul>
특화 사업	특화사업	인천문화재단 "달리는소금꽃"	30회 12명 360명	30회 12명 309명	100% 100%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매주 목, 금</li> <li>- 장소 : 교육실</li> <li>- 내용 :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나, 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함.</li> <li>-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6명씩 2개 분반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4단계시 3명씩 4개분반으로 운영함.</li> </ul>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지원사업	40회 36명 324명	40회 41명 311명	100% 114%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4월-8월</li> <li>- 장소 : 온라인</li> <li>- 내용 : 장애 당사자의 장애관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당사자 권리 중심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li> <li>- 특이사항 : 프로그램별 상황에 맞게 교육방식을 정하여 진행함.</li> </ul>
	연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회의 참석</li> <li>-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의 참석</li> <li>- 탈시설지원법제정촉구 이룸센터 농성</li> <li>-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세종시 집회</li> <li>-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 투쟁단 회의 참석</li> <li>-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인천협의회 회의 참석</li> <li>- 저상버스 도입촉구를 위한 인천시청 투쟁</li> <li>- 장애인학대시설 사망사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li> <li>- 인천지하철 노조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참석</li> <li>- 이용자 서비스변경신청 동행</li> <li>- 이용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동행</li> <li>- 박기연열사 차례</li> <li>- 권오진열사 차례</li> <li>- 인덕인열사 차례</li> <li>- 장애인주치의제도</li> <li>- 경인일보 이동권 조사</li> <li>- 장애인 예산확보 1박2일 전국결의대회</li> </ul>

### 3-2) 사업평가

- 비대면 활동과 코로나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별 유연함이 더해졌음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였음.
- 동료상담 및 개인별지원을 통해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내담자 또는 이용자들의 근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호흡에 지속성을 유지하였음. 코로나 상황으로 문제에 대해 2020년도에 비해 이용자 및 담당자 등이 유연함을 가지며, 활동했다고 생각함.

## 4.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 4-1) 사업현황 보고

####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여성 체험홈)

- 현재 전체 공실임.
- 지속적으로 구청 공고 및 인뇌협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입주자 모집 중임.

#### ②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 1명 거주 중에 있으며 현재 2명이 입주신청한 상태. 11월, 12월 입주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면접자 개인사정으로 시간 조율이 어려워 연기됨.
- 2명이 추가로 신청하고 싶어함. 신청기한이 끝나 면접은 진행되지 못하며 면접 후 안내 예정.

4-2) 사업평가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명	내용	목표		실적		평가
		예산	회기	집행예산	횟수	
요리		1,200,000	30회	113,790	4회	입주자들 간의 갈등과 반복된 다툼으로 인해 입주자 모두 퇴소한 상태임.  입주자들의 입주기간이 짧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여가		1,000,000	20회	697,700	11회	
교류회		200,000	4회	-	1회	
권한 강화		300,000	2회			
캠프		740,000	1회			
상담 지원		1,000,000	10회	90,000	1	
생일		140,000	2회	69,800	1회	
입주 회의		120,000	12회	26,700	4회	
송년회		100,000	1회			
자립 생활 교육	금전관리	-	-		1회	
	건강관리	-	-		2회	
	취업알선	-	-		5회	
	생필품신청	-	-		1회	
	자립생활 계획 수립	-	-		2회	
서비스 연계	타 기관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		9회	



② 발달장애인자립생활주택

사업명	내용	목표		실적		평가
		예산	회기	집행예산	횟수	
요리		1,350,000	39회	904,660	30회	입주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립 연습을 함. 대부분의 입주자는 연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주택 생활에 만족감을 느낌.  입주자 간의 다툼으로 2명이 퇴거함. 큰 사건 모두 주택에 전담 인력이 없을 때 발생함. 서로 이해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여가		1,750,000	23회	1,245,900	14회	
교류회		300,000	6회	91,600	2회	
캠프		730,000	1회	622,505	1회	
생일		70,000	1회	-	0회	
입주회의		220,000	8회	174,460	6회	
송별회		150,000	1회	117,000	1회	
송년회		230,000	1회	132,200	1회	
자립생활연습	자립생활지원	-	-	-	82회	
건강관리	병원동행, 건강교육	-	-	-	17회	
서비스연계	타 기관 자원 및 서비스연계	-	-	-	11기관	

③ 총평

- 여성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어려움. 담당자, 구청과 남성 입주자 모집을 고민 중에 있음.
- 입주자 간의 갈등이 심했던 한해로 갈등으로 인한 퇴거도 많았음.
- 코로나로 폐점한 상업시설들이 있어 계획대로 여가활동을 진행하지 못함.
- 기존 입주자들은 보증금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원주택과의 연계로 앞으로 보증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Ⅱ . 의결안건

### 2. 2021년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계결산서

## 의결안건 2. 2021년 회계결산서

### 1. 법인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1. 자체예산사업	38,132,397	34,489,812	3,642,585	90.45
[1] 후원	8,400,000	8,581,000	-181,000	102.15
-CMS회비	8,400,000	8,581,000	-181,000	102.15
[2] 이월액	14,240,397	14,240,397	0	100.00
-이월액	14,240,397	14,240,397	0	100.00
[3] 기타	15,492,000	11,668,415	3,823,585	75.32
-기타수입	15,000,000	11,502,562	3,497,438	76.68
-활동지원사실습비	480,000	159,000	321,000	33.13
-이자수입	12,000	6,853	5,147	57.11
[세입합계]	38,132,397	34,489,812	3,642,585	90.45
1. 자체예산사업	38,132,397	34,489,812	3,642,585	90.45
[1] 사업비	31,880,000	24,443,099	7,436,901	76.67
(1) 나눔사업	600,000	600,000	0	100.00
-생활비지원	600,000	600,000	0	100.00
(2) 사업지원	19,000,000	16,127,559	2,872,441	84.88
-센터지원	12,400,000	10,689,167	1,710,833	86.20
-체험홈지원	6,600,000	5,438,392	1,161,608	82.40
(3) 연대사업비	4,800,000	4,250,000	550,000	88.54
-연대분담금	4,200,000	4,200,000	0	100.00
-연대행사지원	600,000	50,000	550,000	8.33
(4) 기타사업	7,480,000	3,465,540	4,014,460	46.33
-활동지원사실습비	480,000	70,000	410,000	14.58
-장애열사추모사업	1,000,000	251,000	749,000	25.10
-수용비	6,000,000	3,144,540	2,855,460	52.41
[2] 예비비	6,252,397	10,046,713	-3,794,316	160.69
-예비비	6,252,397	10,046,713	-3,794,316	160.69
[세출합계]	38,132,397	34,489,812	3,642,585	90.45

## 2. 활동지원팀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1. 사업수입	3,770,258,400	3,837,288,075	-67,029,675	101.78
- 사업수입	3,770,258,400	3,837,288,075	-67,029,675	101.78
2. 이월금	565,013,186	565,013,186	0	100.00
- 이월금	565,013,186	565,013,186	0	100.00
3. 잡수입	48,400,000	40,581,208	7,818,792	83.85
- 이자수입	400,000	309,078	90,922	77.27
- 기타잡수입	48,000,000	40,272,130	7,727,870	83.90
<b>[세입합계]</b>	<b>4,383,671,586</b>	<b>4,442,882,469</b>	<b>-59,210,883</b>	<b>101.35</b>
1. 사무비	4,064,591,170	4,016,028,021	48,563,149	98.81
[1] 인건비	3,976,193,170	3,938,750,595	37,442,575	99.06
(1) 급여	3,314,033,696	3,313,607,752	425,944	99.99
- 활동지원사	3,160,908,996	3,165,798,892	-4,889,896	100.15
- 전담인력	153,124,700	147,808,860	5,315,840	96.53
(2) 제수당	60,350,140	60,350,140	0	100.00
- 활동지원사 상여금	45,100,000	45,100,000	0	100.00
- 전담인력 상여금	15,250,140	15,250,140	0	100.00
(3) 퇴직금	258,000,000	257,317,525	682,475	99.74
- 퇴직금	258,000,000	257,317,525	682,475	99.74
(4)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07,895,334	273,659,130	34,236,204	88.88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07,895,334	273,659,130	34,236,204	88.88
(5) 기타후경경비	35,914,000	33,816,048	2,097,952	94.16
- 활동지원사 명절선물	9,600,000	9,446,400	153,600	98.40
- 활동지원사 경조사비	600,000	500,000	100,000	83.33
- 활동지원사 생일 축하금	8,000,000	7,750,000	250,000	96.88
- 장기근속 활동지원사 지원금	2,200,000	2,200,000	0	100.00
- 활동지원사 건강진단 지원	3,200,000	2,900,000	300,000	90.63
- 활동지원사타임오프	10,464,000	9,879,648	584,352	94.42
- 전담인력 역량강화 지원	500,000	140,000	360,000	28.00
- 전담인력 건강검진 지원	600,000	400,000	200,000	66.67
- 전담인력 복지 지원금	750,000	600,000	150,000	80.00
[2] 업무추진비	1,200,000	1,199,800	200	99.98
- 운영위원회	1,200,000	1,199,800	200	99.98
[3] 운영비	87,198,000	76,077,626	11,120,374	87.25
(1) 수용비 및 수수료	26,748,000	22,011,084	4,736,916	82.29
- 공기청정기 임대료	360,000	328,900	31,100	91.36
- 복사기 임대료	1,320,000	1,276,000	44,000	96.67
- 정수기 임대료	588,000	579,600	8,400	98.57
- 회계프로그램 사용료	1,980,000	1,188,000	792,000	60.00
- 노무및세무관리비	6,600,000	6,600,000	0	100.00
- 홈페이지 개편비	1,500,000	1,430,000	70,000	95.33
- 수용비	14,400,000	10,608,584	3,791,416	73.67
(2) 공공요금	22,080,000	19,690,895	2,389,105	89.18
- 사무실 관리비	9,600,000	8,959,755	640,245	93.33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

- 인터넷 및 전화요금	1,920,000	1,958,920	-38,920	102.03
- 팩스 및 문자사용료	1,560,000	1,057,990	502,010	67.82
- 단말기 사용료	9,000,000	7,714,230	1,285,770	85.71
(3) 제세공과금	5,570,000	4,750,980	819,020	85.30
- 신원보증보험	60,000	50,350	9,650	83.92
- 자동차보험	1,000,000	820,240	179,760	82.02
- 운전자보험	960,000	830,000	130,000	86.46
- 활동지원사 배상보험	3,200,000	2,839,000	361,000	88.72
- 자동차세금	200,000	63,890	136,110	31.95
- 화재보험	150,000	147,500	2,500	98.33
(4) 차량운영비	2,000,000	859,000	1,141,000	42.95
- 유류비	1,200,000	570,000	630,000	47.50
- 차량유지비	800,000	289,000	511,000	36.13
(5) 기타운영비	30,800,000	28,765,667	2,034,333	93.40
- 회식비	1,400,000	599,000	801,000	42.79
- 임차료	29,400,000	28,166,667	1,233,333	95.80
2. 재산조성비	14,450,000	14,363,910	86,090	99.40
[1] 시설비	14,450,000	14,363,910	86,090	99.40
- 기능보강	9,350,000	9,350,000	0	100.00
- 자산취득비	5,100,000	5,013,910	86,090	98.31
3. 사업비	16,890,000	15,498,680	1,391,320	91.76
[1] 일반사업비	16,890,000	15,498,680	1,391,320	91.76
(1) 복지사업비	8,620,000	7,370,160	1,249,840	85.50
- 활동지원사 자조모임	1,500,000	1,499,320	680	99.95
- 장애 성인 자조모임	4,000,000	3,392,960	607,040	84.82
- 발달 장애 여성 자조모임	1,920,000	1,919,480	520	99.97
- 중증 장애 여성 자조모임	1,200,000	558,400	641,600	46.53
(2) 교육사업비	5,270,000	5,138,000	132,000	97.50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1,000,000	868,000	132,000	86.80
-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비	1,670,000	1,670,000	0	100.00
- 발달장애인 마음읽기	2,600,000	2,600,000	0	100.00
(3) 지역나눔	3,000,000	2,990,520	9,480	99.68
- 명절 나눔	1,000,000	990,520	9,480	99.05
- 겨울 나눔	2,000,000	2,000,000	0	100.00
4. 예비비 및 기타	287,740,416	396,991,858	-109,251,442	137.97
- 예비비 및 기타	287,740,416	396,991,858	-109,251,442	137.97
<b>[세출합계]</b>	<b>4,383,671,586</b>	<b>4,442,882,469</b>	<b>-59,210,883</b>	<b>101.35</b>

3. 자립생활팀(자립생활센터)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1. 보조금	177,082,000	177,082,000	0	100.00%
[1] 보조금	177,082,000	177,082,000	0	100.00%
2. 자부담	12,177,000	12,178,074	△1,074	100.01%
[1] 자부담	12,177,000	12,178,074	△1,074	100.01%
3. 후원금	27,994,000	27,996,020	△2,020	100.01%
(1) 인천평생교육진흥원	9,994,000	9,995,954	△1,954	100.02%
(2) 인천문화재단	18,000,000	18,000,066	△66	100.00%
[세입합계]	<b>217,253,000</b>	<b>217,256,094</b>	<b>△3,094</b>	<b>100.00%</b>
1. 인건비	147,858,000	136,092,910	11,765,090	92.04%
[1] 급여	106,893,600	10,683,240	5,916,100	64.36%
[2] 제수당	16,599,340	10,683,240	5,916,100	64.36%
[3] 사회보험부담금	11,965,060	10,092,540	1,872,520	84.35%
[4] 사회보험부담금(자부담)	1,157,000	972,080	184,920	84.02%
[5] 퇴직적립금	10,292,000	9,544,245	747,755	92.73%
[6] 퇴직적립금(자부담)	951,000	947,205	3,795	99.60%
2. 운영비	12,231,000	11,931,320	299,680	97.55%
[1] 수용비및수수료	3,162,000	3,159,910	2,090	99.93%
[2] 임차료	3,600,000	3,550,000	50,000	98.61%
[3] 기타운영비	5,469,000	5,221,410	247,590	95.47%
3. 사업비	57,164,000	54,340,280	2,823,720	95.06%
[1] 권익옹호	6,224,000	6,120,000	104,000	98.33%
(1) 찾아가는자기옹호학교	2,700,000	2,700,000	0	100.00%
(2) 장애인인권교육아카데미	600,000	600,000	0	100.00%
(3) 버스타기모니터링단	2,924,000	2,820,000	104,000	96.44%
[2] 개인별자립지원	21,182,000	19,167,280	1,538,720	92.57%
(1) 개인별자립생활지원	3,700,000	3,700,000	0	100.00%
(2) 발달장애청년 자조모임	1,980,000	1,979,580	420	99.98%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3) 최중증발달장애인지조모임	2,880,000	1,567,470	1,312,530	54.43%
(4) 미술교실	4,600,000	4,599,830	170	100.00
(5) 발달장애인 난타교실	5,040,000	4,994,000	46,000	99.09%
(6) AAC 자조모임	850,000	670,400	179,600	78.87%
(7) 노래교실	1,656,000	1656,000	0	100.00%
[3]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지원	1,240,000	1,059,000	181,000	85.40%
(1) 자립생활아카데미	360,000	179,000	181,000	49.72%
(2) 거주시설장애인 금전관리교육	880,000	880,000	0	100.00%
[4] 특화사업	28,994,000	27,994,000	1,000,000	96.55%
(1) 염전골마을축제	1,000,000		1,000,000	
(2) 인천문화재단	9,994,000	9,994,000		100.00%
(3) 인천평생교육진흥원	18,000,000	18,000,000		100.00%
[세출합계]	<b>217,253,000</b>	202,364,510	14,888,490	93.15%



4. 자립생활주택(체험홈)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여성체험홈)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1. 보조금	43,000,000	43,167,613	-167,613	100.39
(1) 보조금	43,000,000	43,167,613	-167,613	100.39
2. 자부담	3,286,000	3,339,632	-53,632	101.63
(1) 자부담	3,286,000	3,339,632	-53,632	101.63
[세입합계]	46,286,000	46,507,245	-221,245	100.48
1. 사무비	39,886,000	37,424,735	2,461,265	93.83
[1] 인건비	34,271,000	33,891,120	379,880	98.89
(1) 급여	25,866,000	25,866,000	0	100.00
(2) 제수당	3,054,060	3,102,060	-48,000	101.57
- 제수당	2,574,060	2,622,060	-48,000	101.86
- 가족수당	480,000	480,000	0	100.00
(3) 퇴직적립금	2,411,160	2,414,030	-2,870	100.12
(4) 사회보험부담금	2,939,780	2,509,030	430,750	85.35
[2] 운영비	5,615,000	3,533,615	2,081,385	62.93
(1) 수용비 및 수수료	750,000	454,800	295,200	60.64
(2) 공공요금	2,640,000	1,174,595	1,465,405	44.49
- 도시가스	1,800,000	848,900	951,100	47.16
- 전기요금	600,000	236,840	363,160	39.47
- 수도요금	240,000	88,855	151,145	37.02
(3) 제세공과금	185,000	86,280	98,720	46.64
- 화재보험	20,000	10,000	10,000	50.00
- 영업배상보험	150,000	65,700	84,300	43.80
- 신원보증보험	15,000	10,580	4,420	70.53
(4) 기타운영비	2,040,000	1,817,940	222,060	89.11
- 주택관리비	720,000	684,000	36,000	95.00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 통신요금	600,000	512,040	87,960	85.34
- 정수기렌탈비	360,000	352,800	7,200	98.00
- 비데기렌탈비	360,000	269,100	90,900	74.75
2. 재산조정비	1,600,000	22,000	1,578,000	1.38
[1] 시설비	1,600,000	22,000	1,578,000	1.38
(1)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2) 시설장비유지비	600,000	22,000	578,000	3.67
3. 사업비	4,800,000	1,158,390	3,641,610	24.13
[1] 개인별지원	4,440,000	1,061,890	3,378,110	23.92
- 요리	1,200,000	113,790	1,086,210	9.48
- 여가활동	1,000,000	858,100	141,900	85.81
- 교류회	200,000		200,000	
- 권한강화	300,000		300,000	
- 캠프	740,000		740,000	
- 상담지원	1,000,000	90,000	910,000	9.00
[2] 일상생활지원	360,000	96,500	263,500	26.81
- 생일	140,000	69,800	70,200	49.86
- 입주회의	120,000	26,700	93,300	22.25
- 송년회	100,000		100,000	
[세출합계]	46,286,000	38,605,125	7,680,875	83.41
[세입-세출]	0	7,902,120		

② 발달장애인지립생활주택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1. 보조금	63,063,000	63,068,975	-5,975	100.01
(1) 보조금	63,063,000	63,068,975	-5,975	100.01
- 전세보증금	20,000,000	20,000,000	0	100.00
2. 자부담	2,763,000	2,764,448	-1,448	100.05
(1) 자부담	2,763,000	2,764,448	-1,448	100.05
[세입합계]	65,826,000	65,833,423	-7,423	100.01
1. 사무비	59,696,000	58,280,890	1,415,110	97.63
[1] 인건비	33,748,000	33,336,000	412,000	98.78
(1) 급여	28,480,940	28,480,940	0	100.00
- 기본급	25,676,600	25,676,600	0	100.00
- 제수당	2,804,340	2,804,340	0	100.00
(2) 퇴직금	2,374,420	2,373,480	940	99.96
(3) 사회보험부담금	2,892,640	2,481,580	411,060	85.79
[2] 운영비	25,948,000	24,944,890	1,003,110	96.13
(1) 수용비 및 수수료	1,500,000	912,900	587,100	60.86
(2) 공공요금	1,663,000	1,647,230	15,770	99.05
- 가스	1,200,000	1,188,260	11,740	99.02
- 수도	463,000	458,970	4,030	99.13
(3) 제세공과금	145,000	128,610	16,390	88.70
- 화재보험	30,000	19,400	10,600	64.67
- 배상책임보험	100,000	98,600	1,400	98.60
- 신원보증보험	15,000	10,610	4,390	70.73
(4) 기타운영비	2,640,000	2,256,150	383,850	85.46
- 통신	480,000	417,640	62,360	87.01
- 정수기	360,000	328,900	31,100	91.36
- 주택관리비	1,800,000	1,509,610	290,390	83.87
(5) 전세보증금	20,000,000	20,000,000	0	100.00

계정과목	예산액	결산액	잔액	비율(%)
2. 자산조성비	1,330,000	1,092,100	237,900	82.11
[1] 시설비	1,330,000	1,092,100	237,900	82.11
(1) 자산취득비	330,000	156,100	173,900	47.30
(2) 시설장비유지비	1,000,000	936,000	64,000	93.60
3. 사업비	4,800,000	3,010,325	1,789,675	62.72
[1] 개인별지원	4,130,000	2,586,665	1,543,335	62.63
(1) 요리	1,350,000	904,660	445,340	67.01
(2) 여가	1,750,000	967,900	782,100	55.31
(3) 교류회	300,000	91,600	208,400	30.53
(4) 캠프	730,000	622,505	107,495	85.27
[2] 일상생활지원	670,000	423,660	246,340	63.23
(1) 생일	70,000		70,000	
(2) 입주회의	220,000	174,460	45,540	79.30
(3) 송년회	230,000	132,200	97,800	57.48
(4) 송별회	150,000	117,000	33,000	78.00
[세출합계]	65,826,000	62,383,315	3,442,685	94.77
[세입-세출]	0	3,450,108		

의견서

-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 지출됨.
- 전세권 말소 및 설정, 부동산 복비로 인한 비용이 운영비에서 지출됨.
- 12월 입주자의 이사지원으로 12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 II . 의결안건

### 3. 2022년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의결안건

## 3.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1. 법인

#### 1-1) 사업 계획

##### ① 사업의 고민

- 새로운 협회장 체계에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고민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회원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고민.

##### ③ 사업의 내용

##### ■ 공부하자 인뇌협

- 월 1회 장애 복지 분야 이슈 다루기
  - 대상 : 기관 종사자 전부
  - 일정 : 매월 마지막 주 00요일 오전
  - 내용 : 한 달간 장애인복지 이슈 브리핑 (탈시설, 노동권, 젠더, 여성, 자립생활, 건강권, 코로나19, 지역 관련 등)
- 장애인권 아카데미
  - 대상 : 인뇌협 활동회원
  - 일정 : 분기별 1회
  - 내용 : 장애해방 열사 강의 혹은 장애 운동 이슈 등

##### ■ 소통하자 인뇌협

- 일상적인 소통 방법(수단)의 통일화 : 구글 문서 활용 (주간회의 시 보고 등을 구글문서로 통일화)
-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 등 공유 및 결과보고 : 카톡방
- 복무 명확화 : 시차(연차) 기록
- 메일 관리 : 메일 확인 후 담당 업무 전달 명확히
- 홈페이지 지속적인 활동보고 : 담당별 홈페이지 활동보고 즉시 보고

##### ■ 연대하자 인뇌협

- 일상적인 연대활동 강화
  - 대상 :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차연, 한뇌협, 한자협, 전장연 등

투쟁 활동 적극 참여

- 회원 참여 독려
- 일상적인 사업 등 일정 사전 확인 필요

- 연대하는 기관을 늘리는 활동 강화

- 대상 : 기관 종사자
  - 목적 : 우리가 만나는 기관과 연계(연대),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눔.

### 1-2) 사업 예산서

과 목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산출근거
	관				
세 입	01	회비수입	8,400,000	9,000,000	7% - (월평균) 750,000(원)*12(월)
	02	이월금	14,240,397	10,046,713	△29% - 2021년 사업비 잔액(12월 사업비 포함)
	03	잡수입	15,492,000	10,372,000	△33% - 장애고용장려금 5,000,000(원)*2(회) - 활동지원사 실습시 15,000(원)*24(명) - 이자수입 : 12,000(원)
세 출	01	사업비	31,880,000	29,418,713	△26% - 취약가정 지원 50,000(원)*12(월) - 센터 지원 12,500,000(원) (인건비 2,356천원, 운영비 8,665천원, 사업비 1,000천원, 기타 479천원) - 자립주택 지원 1,000,000(원)*2(개) (사회보험부담금, 시간외수당 등) - 정기분담금 : 350,000(원)*12(월) - 연대행사지원 50,000(원)*12(월) - 박기연열사 추모사업 : 500,000(원)*2회 - 수용비 400,000(원)*12월 - 활동지원사 실습비 : 10,000(원)*24(명)
	02	예비비	6,252,397	1,201,177	△23% -

## 2. 활동지원팀

### 2-1) 사업목적 및 목표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2) 사업대상

대상구분	대상인구	인구추계
일반집단	인천 장애인 수	148,169명
대상집단	인천 심한 장애인 수	53,335명
표적집단	미추홀 인근 심한 장애인 수 (인천시 :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등)	75,099명
이용집단	현 이용 장애인 수 (2021년 11월 기준)	172명

### 2-3). 2021년 서비스 제공 실적 및 결산내역

	이용인	증감	활보	증감	결재 시간	결제건 수	소급결제	비고
01월	164	-4	153	1	21,778	5,154	471	9.1%
02월	152	-12	152	-1	20,126	5,054	97	1.9%
03월	152	-	154	2	20,067	5,083	694	13.7%
04월	154	2	155	1	20,303	5,253	144	2.7%
05월	156	2	154	-1	19,702	5,066	78	1.5%
06월	160	4	156	2	20,558	5,336	104	1.9%
07월	164	4	162	6	20,655	5,350	72	1.3%
08월	165	1	161	-1	20,890	5,418	73	1.3%
09월	171	6	167	6	20,641	5,417	104	1.9%
10월	166	-5	166	-1	21,111	5,519	124	2.2%
11월	165	-1	167	1	21,593	5,815	193	3.3%

- 2021년 본 기관을 이용한 이용인 수는 연간 1,769명, 월 평균 161명임.
- 결재시간은 11월까지 | 227,424시간, 월평균 20,675시간이었음.
- 2021년 1월과 비교하여 2021년 11월은 이용인은 1명 증가하였지만, 활동지원사는 14명이 증가하였음. 월174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사 증가하였음.
- 시간은 2021년 1월과 비교하여 200시간 정도 줄어들었음. 이것도 월174시간 조정으로 인함.



2-4) 사업운영 계획

가. 사업운영 방안

1) 이용인

가) 이용인 현황 (2021년 11월 말 기준)

구분	활동내용	인원
이용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	172명

나) 신규 이용인(장애인) 확보방안

- 센터 신규이용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함.

다) 서비스 관리 계획

(1) 이용인(보호자) 교육

- 신규 이용인(보호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고 서비스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업 안내 및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이용인(서비스 이용 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는 매년 새로 변경되거나 신설된 사업 지침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내용, 이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되새기는 교육을 함으로써 좀 더 투명한 활동지원서비스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	일시	교육내용
신규 이용인	서비스 이용 1개월 이후 ~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사항: 신고의무사항, 부정사용 시 처벌내용 등</li> <li>• 바우처사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결제처리과정, 추가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li> <li>• 서비스 이용: 서비스 범위, 서비스 제공 확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절차 및 지켜야 할 사항 등</li> <li>• 기타사항</li> </ul>
기존 이용인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li> <li>• 부정수급 방지 대책</li> <li>• 이용인의 권리와 의무 등</li> </ul>

(2)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조사 실시

- 센터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개선사항,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및 친절도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고 모니터링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적정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대상자	일시	모니터링 내용
이용인	연 2회 (상·하반기)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 활동지원인력 및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만족도, 센터 이용 관련 사항 등

2) 활동지원인력

가) 활동지원인력 현황(2021년 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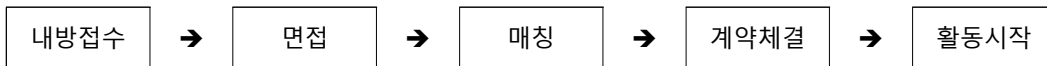
구분	활동내용	인원
활동지원인력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지원 등	167명

나) 신규 활동지원인력 확보방안

(1) 활동지원인력 모집 및 홍보

- 센터 홈페이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지원인력 모집 관련 홍보를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활동지원인력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2) 활동지원인력 모집 방법



다) 서비스 관리 계획

(1) 행정서류(급여일정표, 주간업무보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이용인과 활동지원인력이 매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계획을 세워 급여제공일정표를 작성하고 그 일정표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 주 활동을 마치고 수행한 내용에 대해 주간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여 한 주간 이용인의 상태변화 및 특이사항에 대해 활동지원인력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담관리인력은 이용인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이용인의 욕구 및 특이사항에 대한 관리의 기초자료로 삼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에게 서비스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2) 활동지원인력 간담회

- 연4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수행이 계획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평가(모니터링)하며, 활동지원인력의 고충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참여자	일시	노동조합 간담회 내용
활동지원인력, 전담관리인력,	연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인력 수퍼비전 및 고충상담</li> <li>• 기타 안건회의</li> </ul>

(3) 활동지원인력 보수교육

- 연 4회 자체 보수교육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 안내 및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 등을 통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며, 이용인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는 자료집으로 배포함. 하반기에는 줌 교육으로 50명씩 나누어서 시행함으로 전원 참여할 수 있었음. 향후 집합 교육이 어려울 시는 보수 교육 대체로 줌 교육 및 자료집 또는 동영상강의를 20명 내외로 모집하여 방역 엄수하며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다.

- [활동지원인력 자체(보수)교육 세부계획]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행월
활동지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사업 지침교육</li> <li>- 부정수급 관련 교육</li> <li>- 응급 처치 관련 교육</li> <li>- 개인정보보호교육</li> </ul>	4시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인식개선교육</li> <li>- 성희롱 및 성폭행 관련 교육</li> <li>- 기타 장애인 복지 관련 현황 교육</li> <li>-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li> </ul>	4시간	10월
<b>총 교육시간</b>		<b>8시간</b>	

※ 교육시행 월 및 교육시간은 커리큘럼에 따라 변동가능

3) 전담관리인력

가) 직원현황(사업인력 구성)

이름	담당부서 및 직위	사업 내 역할
신영노	협회장	사업총괄
김광백	사무국장	사업 실무 총괄
주재영	행정지원팀 / 회계	활동지원사업 회계 및 비품관리
김현경	활동지원팀 / 팀장	이용인 및 활동지원인력 관리, 상담 및 연결 등
전종순	활동지원팀 / 코디네이터	이용인 및 활동지원인력 관리, 상담 및 연결 등
총 인원 : 5명		

나) 사례 및 평가회의

- 매월 정기적인 내부회의를 거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며 이용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계획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도록 하여 이용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한다.
- 또한, 이용인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발생 시 상시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고충과 욕구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법을 마련하여 신청자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다) 전담관리인력 교육

- 전담관리인력은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담기법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전담관리인력 연간 교육훈련 세부계획]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내용
전담관리인력	연 1회	성희롱예방 교육
	연 4회	타 기관 코디네이터 협력 회의 진행
	연 1회	응급상황 대응교육(응급처치요령)
	연 1회	장애인 복지 관련 외부 교육

4) 공정표

가) 상반기

구분		공정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지원인력	급여제공일정표 작성	→	→	→	→	→	→	→	→	→	→	→	→
	주간업무보고작성	→	→	→	→	→	→	→	→	→	→	→	→
	급여제공기록지(일괄)작성	→	→	→	→	→	→	→	→	→	→	→	→
	보수교육			→							→		
	간담회			→			→		→				→
이용인	자체 교육	→	→	→	→	→	→	→	→	→	→	→	→
	모니터링		→	→	→					→	→	→	
사업인력	사례 및 평가회의	→	→	→	→	→	→	→	→	→	→	→	→

나) 기타 자원과의 연계활동

- 본 기관 부설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한다.

5) 기대효과

- 이용인에게 활동지원인력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 관리를 통하여 이용인의 서비스 만족도, 부당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품질 보장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2) 사업 예산서

① 세입

관		항		목		예산액	산출근거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사업수입	4,218,000,000	- (월평균) 14,800(원)*20,000시간*12(월) - (월평균) 22,200(원)*2,500(시간)*12(월)
02	이월금	21	이월금	211	이월금	396,991,858	-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400,000	- 2020년 이자 기준
계						4,615,391,858	

② 세출

관		항		목		예산액	산출근거
01	사무비	1	인건비	111	활동지원사	3,355,380,000	- 기본소득 10,992(원)*20,000(시간)*12(월) / 주휴포함 - 연차수당 : 527(원)*20,000시간*12(월) -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 16,488(원)*2,500(시간)*12(월) - 공휴일수당 : 9,160(원)*700(시간)*15일
				112	전담인력	134,871,000	- 사무국장 및 코디네이터 3인 인건비
				113	재수당	64,361,520	- 활동지원사 상여금 : 100,000(원)*170(명)*3(회) - 전담인력 상여금 : 월급여*60(%)*2(회)
				114	퇴직금	275,648,936	- 활동지원사 : 급여총액/12 - 전담인력 : 급여총액/12(협회장 제외) - 활동지원사 : 재수당/12 - 전담인력 : 재수당/12(협회장 제외)
				114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39,157,973	- 국민연금 : (활동지원사+전담인력)*4.50% - 건강보험 : (활동보조인+전담인력)*3.43% - 장기요양보험 : (활동보조인+전담인력)*3.335%*11.52% - 고용보험 : (활동지원사+전담인력)*1.45% - 산업재해 : (활동지원사+전담인력)*0.9%
				115	기타후생경비	34,092,000	- 명절 선물 : 30,000(원)*180(개)*2(회) - 활동지원사 생일 축하금 : 50,000(원)*160(명) - 전담인력 역량강화 : 100,000(원)*5(명) - 전담인력 건강검진 : 200,000(원)*2(명) - 전담인력 복지 지원금 : 150,000(원)*4(명) - 전담인력 급량비 : 50,000(원)*5(명)*12(월) - 타임오프 : 10,464(원)*1,000(시간)
		1	업무추진비	121	회의비	1,620,000	- 운영위원회 회의비 : 30,000(원)*9(명)*6(회)
1	운영비	131	수용비 및 수수료	25,548,000	- 공기청정기 임대료 : 30,000(원)*1(개)*12(월) - 복사기 임대료 : 110,000(원)*12(월) - 정수기 임대료 : 48,300(원)*12(월) - 회계프로그램 사용료 : 165,000(원)*12(월) - 노무 및 세무관리비 : 550,000(원)*12(월) - 홈페이지 개편비 : 300,000(원)*1(회) - 수용비 : 1,200,000(원)*12(월)		
		132	공공요금	22,080,000	- 사무실 관리비(전기,수도 등) : 800,000(원)*12(월) - 인터넷 및 전화요금 : 160,000(원)*12(월)		

관	항	목	예산액	산출근거			
				- 팩스 및 문자사용료 : 130,000(원)*12(월) - 단말기 통신료 : 750,000(원)*12(월)			
		133	제세공과금	5,770,000	- 신원보증보험 : 60,000(원)*1회 - 자동차 보험 : 1,000,000(원)*1회 - 사무실 화재 보험 : 150,000(원)*1(회) - 운전자 보험 : 40,000(원)*2(명)*12(월) - 활동지원사 배상보험: 20,000(원)*160(명) - 자동차세 : 200,000(원)*1(년)		
		134	차량비	1,340,000	- 유류비 : 70,000(원)*12(월) - 차량유지비 : 500,000(원)*1(년)		
		135	기타 운영비	30,400,000	- 전담인력 회식비 : 50,000(원)*5(명)*4(회) (활동 및 근로지원인력 포함) - 임차료 : 2,450,000(원)*12(월)		
02	재산 조성비	2	시설비	211	시설비	2,000,000	- 사무실 기능 보강 : 2,000,000(원)*1(년)
			212	자산취득비	3,000,000	- 사무실 물품 구입 : 3,000,000(원)*1(년)	
03	사업비	3	일반사업비	311	활동지원사 교육	13,657,600	- 강사비 : 150,000(원)*4회*2회=1,200,000(원) - 교육비 : 15,000(원)*170(명)*2(회)=5,100,000(원)
			312	지역나눔	2,000,000	- 겨울 나눔 : 2,000,000(원)*1(회)	
04	예비비	4	예비비	411	예비비	304,464,829	-
계				4,615,391,858			

### 3. 자립생활팀(자립생활센터)

#### 3-1) 사업 계획

구분	주요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기간	목표	사업내용
기본 사업	권익 옹호 지원	찾아가는 자기 옹호 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장애학생	1월-2월 4월-10월 7월-8월	22회 실/ 24명 연/ 132명	- 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여름방학 계절학교 운영 (2팀/각 6명/5회기) - 인천 소재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 찾아가는 자기옹호학교 진행 (2팀/6회기/6명)
		발달장애인 조력인양성과정	발달장애인 부모 및 사회복지사	4월~6월	12회 실/ 40명 연/ 480명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공동사업으로 자조모임 조력인 양성과정 진행. - 이론 8회기, 실습 4회기 진행
		장애인인권아카데미	장애인 및 지역사회 주민	3월~10월	5회 실/ 10명 연/ 50명	- 사회 및 인권문제에 관한 강의 제공을 통해 참여자와 문제의식 공유 - 참여자들의 인권감수성 함양 및 권익옹호 활동의 기반 마련
		장애인부모교육	장애 부모 및 종사자	4월-9월	16회 실/ 30명 연/ 96명	- 인천 지역의 장애 부모 및 사회복지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학 설명회, 장애복지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진행
		투표소모니터링	선거 투표소	3월-6월	1건	-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장애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
		기관 네트워크 사업	지역사회	연중	-	- 인천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 네트워크사업 진행 - 인천 시민사회 단체 간 네트워크 사업 진행 - 420 인천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연대를 통한 장애인 정책개발 활동 진행
	동료상담	개별상담	지역 장애인	연중	60건	- 동료상담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경험 전달을 통해 당사자의 역량강화 및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함.
	개인별 지원	개인별 지원 라이프스케치	지역 장애인	3월-11월	실/ 5명 연/ 5명	-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기획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여성 자조모임	발달 장애여성	1월-12월	24회 실/ 8명 연/ 192명	- 발달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발달장애 청년자조모임	발달 장애인	1월-12월	24회 실/ 8명 연/192명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최중증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중증발달 장애인	1월-12월	24회 실/ 5명 연/120명	-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을 통한 자기결정권 향상 및 자기 욕구 발견
		장애인 자조모임 "자발프"	장애인	2월-11월	40회 실/ 10명 연/ 400명	- 지역사회 및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자기결정권,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보치아 자조모임 "곰두리"	장애인	3월-11월	36회 실/ 10명 연/ 360명	- 장애인의 일상생활 강화를 위한 생화체육 교실 보치아 교실 운영
		작은자 자조모임	발달 장애인	1월-12월	30회 실/ 5명 연/ 150명	- 발달장애인들과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미술 활동	장애인	3월-11월	24회 실/ 5명 연/ 120명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여가활동을 강화함.



구분	주요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기간	목표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난타활동	발달 장애인	2월~11월	28회 실/ 10명 연/ 280명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난타교실을 통해 자신감 향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함.
		AAC 자조모임	뇌병변/언어장애인	4월~6월	10회 실/ 4명 연/ 40명	- 언어장애인들의 표현강화를 위해 AAC의 종류와 개념을 알아보고 조력인을 통해 언어장애인들의 AAC 실효성을 높이도록 자조모임 운영함.
		노래 활동	장애인	5월~12월	30회 실/ 5명 연/ 150명	-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노래를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가활동을 지원함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도도한 걸(girl)”	여성 장애인	3월~12월	20회 실/ 4명 연/ 80명	- 여성주도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여성장애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나눔.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3월~12월	12회 실/ 8명 연/ 96명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경험 증진
		금전관리교육	시설 및 자립주택 거주장애인	4월~5월	8회 실/ 10명 연/ 80명	-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금전관리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이해하여 자립생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거주시설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	거주시설 장애인	연중	6건	-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당사자의 인권의 중요성, 자립생활의 개념 설명 및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독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 사업	선택 사업	보장구지원사업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월~12월	12회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무상점검 및 보장구와 관련한 정보제공
특화 사업	특화 사업	주안5동 염전골 마을축제	주안5동 주민	10월	실/1건 연/1건	- 센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를 통해 주안5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축제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센터의 위상을 향상함.
		주안5동 염전골마을축제사업	장애인 및 지역주민	10월-12월	1회	- 센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를 통해 주안5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축제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센터의 위상을 향상함.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3월-9월	40회 실/ 32명 연/320명	- 장애 당사자의 장애관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당사자 권리 중심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 (4팀/10회/8명)

3-2) 사업 예산서

구분	주요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기간	목표	사업내용
기본 사업	권익 옹호 지원	찾아가는 자기 옹호 학교	고등학교 재학중인 장애학생	1월-2월 4월-10월 7월-8월	22회 실/ 24명 연/ 132명	- 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어름방학 계절학교 운영 (2팀/각 6명/5회기) - 인천 소재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 찾아가는 자기옹호학교 진행 (2팀/6회기/6명)
		발달장애인지역인양성과정	발달장애인 부모 및 사회복지사	4월~6월	12회 실/ 40명 연/ 480명	- 인천발달장애인지역지원센터 및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공동사업으로 자조모임 조력인 양성과정 진행. - 이론 8회기, 실습 4회기 진행
		장애인인권아카데미	장애인 및 지역사회 주민	3월~10월	5회 실/ 10명 연/ 50명	- 사회 및 인권문제에 관한 강의 제공을 통해 참여자와 문제의식 공유 - 참여자들의 인권감수성 함양 및 권익옹호 활동의 기반 마련
		장애인부모교육	장애 부모 및 종사자	4월-9월	16회 실/ 30명 연/ 96명	- 인천 지역의 장애 부모 및 사회복지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학 설명회, 장애복지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진행
		투표소모니터링	선거 투표소	3월-6월	1건	-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장애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
		기관 네트워크 사업	지역사회	연중	-	- 인천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 네트워크사업 진행 - 인천 시민사회 단체 간 네트워크 사업 진행 - 420 인천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연대를 통한 장애인 정책개발 활동 진행
	동료 상담	개별상담	지역 장애인	연중	60건	- 동료상담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경험 전달을 통해 당사자의 역량강화 및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함.
	개인별 지원	개인별 지원 라이프스케치	지역 장애인	3월-11월	실/ 5명 연/ 5명	-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기획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여성 자조모임	발달 장애여성	1월-12월	24회 실/ 8명 연/ 192명	- 발달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발달장애 청년자조모임	발달 장애인	1월-12월	24회 실/ 8명 연/ 192명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최중증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중증발달 장애인	1월-12월	24회 실/ 5명 연/ 120명	-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을 통한 자기결정권 향상 및 자기 욕구 발견
		장애인 자조모임 "자발프"	장애인	2월-11월	40회 실/ 10명 연/ 400명	- 지역사회 및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자기결정권,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보치아 자조모임 "곰두리"	장애인	3월-11월	36회 실/ 10명 연/ 360명	- 장애인의 일상생활 강화를 위한 생화체육 교실 보치아 교실 운영
작은자 자조모임		발달 장애인	1월-12월	30회 실/ 5명 연/ 150명	- 발달장애인들과 자조모임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기결정권 및 자기옹호 향상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함.	
미술 활동	장애인	3월-11월	24회 실/ 5명 연/ 120명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여가활동을 강화함.		
발달장애인 난타활동	발달 장애인	2월-11월	28회 실/ 10명 연/ 280명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난타교실을 통해 자신감 향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함.		
AAC 자조모임	뇌병변/언어장애인	4월-6월	10회 실/ 4명 연/ 40명	- 언어장애인들의 표현강화를 위해 AAC의 종류와 개념을 알아보고 조력인을 통해 언어장애인들의 AAC 실효성을 높이도록 자조모임 운영함.		
노래 활동	장애인	5월-12월	30회 실/ 5명 연/ 150명	-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노래를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가활동을 지원함		

구분	주요 사업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 기간	목표	사업내용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 지원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도도한 걸(girl)”	여성 장애인	3월~12월	20회 실/ 4명 연/ 80명	- 여성주도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여성장애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나눔.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3월~12월	12회 실/ 8명 연/ 96명	-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경험 증진
		금전관리교육	시설 및 자립주택 거주장애인	4월~5월	8회 실/ 10명 연/ 80명	-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금전관리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이해하여 자립생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거주시설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	거주시설 장애인	연중	6건	-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당사자의 인권의 중요성, 자립생활의 개념 설명 및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독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선택 사업	선택 사업	보장구지원사업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월~12월	12회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무상점검 및 보장구와 관련한 정보제공
특화 사업	특화 사업	주안5동 염전골 마을축제	주안5동 주민	10월	실/1건 연/1건	- 센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를 통해 주안5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축제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센터의 위상을 향상함.
		주안5동 염전골마을축제사업	장애인 및 지역주민	10월-12월	1회	- 센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를 통해 주안5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축제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센터의 위상을 향상함.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3월~9월	40회 실/ 32명 연/320명	- 장애 당사자의 장애관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당사자 권리 중심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 (4팀/10회/8명)

#### 4. 자립생활주택(체험홈)

##### 4-1) 사업 계획

#####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여성 체험홈)

사업명	목표	사업내용	비고
개인별 지원	자립 생활 지원	1. 대상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건강관리(병원 이용·약 복용 등) - 식생활관리(식단 구성·장 보기·요리·외식 등) - 의생활관리(정리정돈·세탁방법 등) - 가사관리(가전제품 사용·청소 방법 등) - 금전관리(가계부 작성 등을 통해 소비패턴 확인 등)	
	사회 적응 지원	1. 대상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사회편의시설활용(주민센터, 세탁소 등) - 대인관계기술 습득 - 핸드폰 사용(전화·문자·사진·구매 등) - 금융기관활용(예·적금, 현금인출기 이용 등) - 교육(성·인권·안전 등 권한강화)	
	지역 사회 교류	1. 대상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지역사회 행사 및 사회활동 참여 - 지역 내 자원 활용 - 타 기관 주택입주자·시설입주자·자립한 이용자와의 모임을 통해 자립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자립 준비	
	여가 생활 지원	1. 대상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문화 및 체험활동(공예·베이킹·뮤지컬·연극관람 등) - 지역탐방 및 나들이	
	직업 생활 지원	1. 대상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 - 취업알선 및 교육	
일상 생활 지원	정서 지지	1. 대상자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개별 생일파티 - 개별 상담(동료상담·미술·심리·원예 등) - 자치회의(입주회의)를 통해 규칙 세우기 - 송년회를 통해 입주자의 자존감 및 만족도 향상	

② 발달장애인지원생활주택

사업명	목표	사업내용	비고
개인별 지원	자립 생활 지원	1. 대상자 : 주택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연중무휴) - 개인위생관리 - 건강관리 - 식생활관리 - 의생활관리 - 가사관리 - 금전관리	
	사회 적응 지원	1. 대상자 : 주택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연중무휴) - 편의시설 활용 - 대중교통수단 활용 - 대인 관계 기술 습득 - 휴대폰 사용 - 금융 기관 활용	
	지역 사회 교류	1. 대상자 : 주택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2월~12월) - 지역주민과의 교류 활동 - 타 기관 주택입주자·시설입주자·자립한 이용자와의 모임을 통해 자립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자립 준비 - 지역사회 행사 및 사회활동 참여 - 지역 내 자원 활용 - 옹호대회 참석	
	여가 생활 지원	1. 대상자 : 주택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2월~12월) - 여가 활동 - 캠프 및 나들이	
	직업 생활 지원	1. 대상자 : 주택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직장생활에 관한 상담 - 취업 정보제공 및 연계	
일상 생활 지원	정서 지지	1. 대상자 : 주택입주자 2. 시기 및 내용 (1월~12월) - 개별 생일파티 - 입주회의를 통한 규칙 수립 및 상호지지 - 송년회를 통한 입주자의 자존감 및 만족도 향상	

4-2) 사업 예산서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여성 체험홈)

구분	세부내역	세부산출내역	소요예산	보조금	자부담
총 계			52,084,000	49,984,000	2,100,000
사 무 비	인건비 소계		40,069,000	37,984,000	2,085,000
	인 건 비	1.급여	31,570,820	31,570,820	
		1)기본급	27,636,800	27,636,800	
		2)제수당	3,934,020	3,934,020	
		2.시간외 수당	2,433,120	348,120	2,085,000
		3.퇴직적립금	2,833,590	2,833,590	
		4.사회보험부담금	3,231,470	3,231,470	
		1)국민연금 $31,149,950\text{원} \times 4.50\% = 1,401,748\text{원}$	1,401,750	1,401,750	
		2)건강보험 $31,149,950\text{원} \times 3.495\% = 1,088,691\text{원}$	1,088,700	1,088,700	
		3)요양보험(급여) 건강보험총액 $\times 12.27\% = 133,582\text{원}$	133,590	133,590	
		4)고용보험 $31,149,950\text{원} \times 1.15\% = 358,224\text{원}$	358,230	358,230	
	5)산재보험 $31,149,950\text{원} \times 0.80\% = 249,200\text{원}$	249,200	249,200		
	운영비 소계		5,615,000	5,600,000	15,000
	운 영 비	1. 수용비 및 수수료	1,292,000	1,292,000	
		- 수용비 및 수수료 1,292,000원	1,292,000	1,292,000	
2. 공공요금		2,640,000	2,640,000		
- 가스요금 $100,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1,200,000\text{원}$		1,200,000	1,200,000		
- 전기요금 $50,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600,000\text{원}$		600,000	600,000		
- 수도요금 $20,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240,000\text{원}$		240,000	240,000		
- 통신요금 $50,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600,000\text{원}$		600,000	600,000		
3. 제세공과금		135,000	120,000	15,000	
- 화재보험 $20,000\text{원} \times 1\text{회} = 20,000\text{원}$		20,000	20,000		
- 영업배상보험 $100,000\text{원} \times 1\text{회} = 100,000\text{원}$		100,000	100,000		
- 신원보증보험 $15,000\text{원} \times 1\text{회} = 15,000\text{원}$		15,000		15,000	
4. 기타운영비		1,548,000	1,548,000		
- 정수기요금 $27,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324,000\text{원}$		324,000	324,000		
- 주택관리비 $60,000\text{원} \times 9\text{회} = 540,000\text{원}$ $120,000\text{원} \times 3\text{회} = 360,000\text{원}$		900,000	900,000		
- 비데기요금 $27,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324,000\text{원}$	324,000	324,000			

구분	세부내역	세부산출내역	소요예산	보조금	자부담	
재산 조성 비	재산조성비 소계		1,600,000	1,600,000		
	시 설 비	1.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 비품비 1,000,000원	1,000,000	1,000,000		
		2. 시설장비유지비	600,000	600,000		
- 유지비 600,000원		600,000	600,000			
사 업 비	사업비 소계		4,800,000	4,800,000		
	개 인 별 지 원	1. 자립지원(요리, 직업탐색 등)	800,000	800,000		
		- 40,000원×10회×2명=800,000원	800,000	800,000		
		2. 여가활동	1,400,000	1,400,000		
		- 70,000원×10회×2명=1,400,000원	1,400,000	1,400,000		
		3. 교류회	200,000	200,000		
		- 50,000원×2회×2명=200,000원	200,000	200,000		
		4. 역량강화(인권·성교육, 상담, 메이크업 강좌 등)	1,200,000	1,200,000		
		- 강사비 150,000원*4회=600,000원	600,000	600,000		
		- 상담 100,000원*6회=600,000원	600,000	600,000		
		5. 지역탐방	800,000	800,000		
		- 교통비 250,000원×2회=500,000원	500,000	500,000		
		- 식대 48,000원(12,000×2회×2명)×2회=96,000원	96,000	96,000		
		- 프로그램비 80,000원(40,000×2명)×2회=160,000원	160,000	160,000		
		- 여행자보험 15,000원×2회=30,000원	30,000	30,000		
		- 예비비 14,000원	14,000	14,000		
		일상 생활 지원	생일	140,000	140,000	
			- 70,000원×1회×2명=140,000원	140,000	140,000	
			2. 입주회의	120,000	120,000	
			- 다과비 10,000원×12회=120,000원	120,000	120,000	
3. 송년회	140,000		140,000			
- 140,000원×1회=140,000원	140,000	140,000				

② 발달장애인지리생활체험

구분	세부내역	세부산출내역	소요예산	보조금	자부담	
총 계			51,937,000	49,984,000	1,953,000	
사무비	사무비 소계		45,057,000	43,104,000	1,953,000	
	인건비	인건비 소계	39,922,000	37,984,000	1,938,000	
		1. 급여	31,415,560	31,415,560		
		1) 기본급	27,761,200	27,761,200		
		2) 제수당	3,654,360	3,654,360		
		2. 퇴직적립금	2,823,280	2,823,280		
		3. 사회보험부담금	3,219,480	3,219,480		
		1) 국민연금 31,064,461원×4.50%=1,397,900원	1,397,900	1,397,900		
		2) 건강보험 31,064,461원×3.43%=1,085,710원	1,085,710	1,085,710		
		3) 요양보험 건강보험총액×11.52%=133,220원	133,220	133,220		
		4) 고용보험 31,064,461원×1.05%=357,240원	357,240	357,240		
		5) 산재보험 31,064,461원×0.79%=245,410원	245,410	245,410		
		4. 시간외수당	2,463,680	525,680	1,938,000	
		운영비	운영비 소계		5,135,000	5,120,000
	1. 수용비 및 수수료		750,000	750,000		
	- 750,000원		750,000	750,000		
	2. 공공요금		2,080,000	2,080,000		
	- 가스요금 12개월=1,200,000원		1,200,000	1,200,000		
	- 통신요금 40,000원×12회=480,000원		480,000	480,000		
	- 수도요금 12개월=400,000원		400,000	400,000		
3. 제세공과금	145,000		130,000	15,000		
- 화재보험 30,000원×1회=30,000원	30,000		30,000			
- 영업배상보험 100,000원×1회=100,000원	100,000		100,000			
- 신원보증보험 15,000원×1회=15,000원	15,000		15,000			
4. 기타운영비	2,160,000	2,160,000				
- 정수기요금 30,000원×12회=360,000원	360,000	360,000				
- 주택관리비 150,000원×12회=1,800,000원	1,800,000	1,800,000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소계		2,080,000	2,080,000		
	시설비	1. 자산취득비	1,330,000	1,330,000		
		- 비품비 1,330,000원	1,330,000	1,330,000		
		2. 시설장비유지비	1,000,000	1,000,000		
- 수선비 및 수리비 750,000원	750,000	750,000				
사업비	사업비 소계		4,800,000	4,800,000		
	개	1. 요리활동	1,140,000	1,140,000		



구분	세부내역	세부산출내역	소요예산	보조금	자부담
면 별 지 원 비	인	- 30,000원×6회×3명=540,000원	1,140,000	1,140,000	
		- 50,000원×5회×3명=600,000원			
		2. 여가활동	1,530,000	1,530,000	
		- 60,000원×6회×3명=1,080,000원	1,530,000	1,530,000	
		- 150,000원×5회×3명=450,000원			
		3. 교류회	240,000	240,000	
		- 40,000원×2회×3명=240,000원	240,000	240,000	
		4. 권한강화	570,000	570,000	
		- 참가비 50,000원×1회×4명=200,000원	200,000	200,000	
		- 교통비 70,000원×1회×4명=280,000원	280,000	280,000	
		- 식대비 10,000원×2회×4명=80,000원	80,000	80,000	
		- 예비비 10,000원	10,000	10,000	
		5. 캠프	707,000	707,000	
		- 숙박비 250,000원×1회=250,000회	250,000	250,000	
		- 주유비 80,000원×1회=80,000원	80,000	80,000	
		- 식대비 12,000원×4회×4명=192,000원	192,000	192,000	
		- 프로그램비 40,000원×4명=160,000원	160,000	160,000	
		- 여행자보험 15,000원×1회=15,000원	15,000	15,000	
	- 예비비 10,000원	10,000	10,000		
	일상 생활 지원	1. 생일	210,000	210,000	
		- 70,000원×1회×3명=210,000원	210,000	210,000	
		2. 입주회의	250,000	250,000	
		- 다과비 25,000원×10회=250,000원	250,000	250,000	
3. 송년회		153,000	153,000		
- 153,000원	153,000	153,000			

## Ⅱ . 의결안건

### 4. 신임 협회장 선출의 건

1.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위원회는 김솔(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을 신임 협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 2. 후보 소개

### <후보 약력 소개>

● 이름 : 김솔

● 주요 경력

- 전)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 전)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 현)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3. 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솔 입니다.

2021년도를 돌이켜 보면 모두가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한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외출도 마음껏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저도 동료상담가로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이만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계신 회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태동부터 함께 하신 신영노 협회장이 있어 지금의 “인천뇌병변인권협회”가 지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노 협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 미력하나 제가 후보로 추천이 되었고,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협회장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야 하므로 매우 무겁고, 전임 협회장님의 걸어오신 길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허나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품었던 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저의 목표는 첫 번째는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라는 것입니다. 저희 활동지원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협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두 번째 목표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목표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당사자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침해받거나 나의 선택을 저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당사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인천뇌병변인권협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2021년도를 버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2022년도에는 늘 평안한 일만이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46, 602호**

**☎\_032-886-4880 • fax\_032-232-0540**

**홈페이지 : <http://www.icucp.org>**

**이메일 : [icucp@naver.com](mailto:icucp@naver.com)**